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지급보증면제 및 압류 제도 개선 등〉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03호)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45호)
- 이현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31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이강일 의원안(제220920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강준현 의원안(제2209345호)	3
1. 제안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 이현승 의원안(제2210531호)	6
1. 제안경위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
IV . 검토의견	8
1. 하도급대금 지급제도에 관한 논의의 전개	8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건 개선(강준현·이현승 의원안)	11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강준현·이현승 의원안) ...	22
4. 하도급 연동제 적용 대상의 확대(이강일 의원안)	27
5. 하도급대금의 압류 제한(이강일·강준현·이현승 의원안)	33

I. 이강일 의원안(제2209203호)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강일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3. 20.
- (3) 회 부 일 : 2025. 3.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원재료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비용에 민감한 업종의 수급사업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사업자의 도급금액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 관한 부분은 양도, 면제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

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항·제17항,
제14조의2 신설 등).

II. 강준현 의원안(제2209345호)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3. 25.
- (3) 회 부 일 : 2025. 3.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한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지급보증 의무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공정위가 조사한 건설 분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점검 결과, 551건의 지급보증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됨. 담당자 과실로 지급보증 미가입, 계약사항 변경에도 지급보증 미갱신, 지연 가입 등 위반의 유형 또한 다양함.

게다가 최근의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및 자금 경색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금 지급마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급보증 의무 예외사유 중 원사업

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 여력을 강화하고자 함.

또, 현행법에는 일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렇지만 최소 2회분 이상의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야 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의 현금비율과 다르게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없어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은 압류나 양도, 면제 처분 등을 할 수 없도록 해 대금 채권의 이행을 우선순위로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나.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로 수급사

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3호, 제5호 신설).

다.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와 양도·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Ⅲ. 이헌승 의원안(제2210531호)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5. 15.

(3) 회 부 일 : 2025. 5.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에 상응한 조치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위변제 하도록 하며, 3자간 합의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하는 경우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자 직불이 가능함.

이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원사업자가 3자 합의에 기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IV. 검토의견

1. 하도급대금 지급제도에 관한 논의의 전개

- 현행법 제2조제1항¹⁾은 하도급거래를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이를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등을 하고 그 대가인 하도급대금을 받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의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완료한 후 후불 형식으로 지급되는데, 원사업자의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신이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연쇄적 도산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 먼저, 현행법 제13조에 따라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비율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음.

- 다음으로, 현행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건설위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과 계약이행의 보증을 각각 하여야 함(지급보증제도).
- 또한, 현행법 제14조에서는 원사업자의 지급불능의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음(직접 지급제도).

□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법상 지급보증제도는 원칙적으로 의무나 보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두고 있고, 발주자 직접 지급제도는 원사업자의 채권에 대해 제3자의 압류가 설정된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임.

□ 국회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용역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급보증을 면제할 수 있는 요건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축소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음.²⁾

2)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2207163, 2207192)

-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대금의 지급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및 각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운영(2025년 2월~5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마련 중임.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건 개선(강준현·이현승 의원안)

□ 개정안들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하여야 하는 요건을 완화(안 제3호)하고 확대(안 제5호)하려는 것임.

- 즉, 강준현 의원안 및 이현승 의원안의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여야 함.
- 또한, 안 제14조제1항제5호에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강준현 의원안) 현금 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이현승 의원안)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도 발주자는 수급사업자 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함.

현 행	강준현 의원안	이현승 의원안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 ----- ----- ----- -----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 ----- ----- ----- -----

현행	강준현 의원안	이헌승 의원안
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3. ----- ----- ----- -----하도급대금 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 ----- -----	3. ----- ----- ----- -----하도급대금 을----- -----지급기일까지 1회이상 지급하지-----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

현행	강준현 의원안	이헌승 의원안
	<u>급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u>	<u>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u>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먼저, 개정안 제14조제1항제3호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현행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조 제4항³⁾에 따라 발주자는 자신의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함.

이때, 원사업자의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다면 발주자는 자신의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와의 순위를 고려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됨.⁴⁾

3)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1다64769 판결 등에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원수급인(원사업자)의 도급인(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있다고 보거나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 즉,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가 공사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도급하고, 공사를 마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등을 신청하여 채권의 집행보전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음.⁵⁾

- 특히, 현행법처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이미 하도급대금 채권에 대한 법원의 압류 결정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정안들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임.

- 참고로 프랑스는 「하도급에 관한 법률(Loi n° 75-1334 du 31

사실상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것을 일부 제한하였음.

- 5) 예를 들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10억원이고, 원사업자의 제3의 채권자가 8억원을 압류한 상황에서 공사를 마친 수급사업자가 3억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면(직접 지급 요청이 압류 결정 이후 시점), 압류된 8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2억원(10억원-8억원)의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수급사업자는 3억원 중 2억원만 회수가 가능함.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oustraction)」⁶⁾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불능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장치로서 모든 공사에 직접지급과 직접소권 제도를 두고 있음.

이 중 직접소권은 채권자인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채무자인 원사업자의 제3채무자(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

즉,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의 동의와 승인을 얻으면 직접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들은 직접소권을 행사하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 다음으로, 개정안들이 신설하려는 제14조제1항제5호는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 현행법 제13조제4항7)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6) 프랑스의 해당 법률에 대한 검토는 아래의 두 가지 문헌을 참고함.

- 손계준, ‘프랑스 하도급법상 직접소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해관계인과의 우열 문제를 중심으로’, 「경쟁저널」 제226호(2025년 2월), 공정경쟁연합회, pp. 66~81
- 박승국·이호일,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방안 -하도급대금지급지급, 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압류금지’, 「건설정책리뷰」 2024-10(2025년 1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pp. 28~33

7)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이나 단기어음 등으로 지급받고도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는 장기어음 등으로 결제함으로써 수급사업자는 수취어음 할인 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여야 하고 부도의 위험도 커질 수 있는데 현행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나아가 원사업자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통을 보장하려는 것임.
- 아울러 개정안은 발주자의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원사업자를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로 간주함으로써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지급 불능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규율하려는 것이 그 목적⁸⁾인데 개정안처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발주자 부담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8) 이 법의 제1조에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즉,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는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25조⁹⁾, 제25조의3¹⁰⁾, 제26조¹¹⁾에 따라 각각 시정조치, 과징금,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등 조치가 가능함.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를 완화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발주자 부담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직접 지급은 발주자가 소수의 원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행정적 비용도 유발하게 됨.

이와 더불어 발주자는 직접적인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급 제도로 인해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하기 어렵거나 3자 간 합의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발주자가 대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다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¹²⁾도 있음.

9)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략),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중략)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0)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발주자

11)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략)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중략)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2)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둘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에 대한 비판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 및 책임소재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임.¹³⁾

즉,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공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등 계약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1회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여기에는 지연지급이나 행정상 착오 등에 따른 미지급도 해당되므로 원사업자에 지나치게 불리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음.

또한, 직접 지급은 하도급계약 당사자와 대금 지급의 주체가 상이하여 법적 책임소재의 확정이 어려워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아울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확대하면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 권한을 축소시키므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통제권 약화와 이로 인해 효율적인 공정·품질관리의 저하를 유발한다는

13)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에 대한 비판은 아래의 두 개 문헌을 참고함.

- 심재한,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 『경영법률』 제28권제1호(2017), 한국경영법률학회, p.333
- 박용석·김영덕·최석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건설이슈포커스』 2016. 5.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pp. 24~31

의견도 제기됨.

- 셋째,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원사업자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현행법이 이미 강력한 처벌규정¹⁴⁾을 두고 있어 원사업자의 법 위반 유인이 적은 상황에서 이를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입법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근거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¹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개정안들은 그 취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법 문언 등에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함.

먼저 개정안 제1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발주자 직접 지급의 요건으로서 강준현 의원안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이현승 의원안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기일까지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

14) 제25조의 시정조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 제26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등

15) 대한건설협회

하여, 두 개정안은 문언상으로는 차이를 보이는데, 해석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행 규정이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있고, 법원의 압류 결정 전에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현승 의원안처럼 규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 제14조제1항제5호의 경우 강준현 의원안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을, 이현승 의원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13조 제4항16)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강준현 의원안처럼 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봄.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5년 1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발주자 직접 지급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16)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 5월까지 운영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태스크포스’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최종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임.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 전문가 현황>

성명	현 직위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이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김민우	법무법인 봄 변호사
김남수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대한상공회의소 추천)
황보운	법무법인 공정 대표변호사(중소기업중앙회 추천)
김민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대한건설협회 추천)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대한전문건설협회 추천)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강준현·이헌승 의원안)

☐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요건을 현행보다 축소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illegible]

현행	강준현 의원안	이현승 의원안
원사업자에게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 ----- ----- ----- -----.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 ----- -----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 개정안들은 현행 시행령¹⁷⁾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①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삼자 간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있음.

□ 개정안들은 현행법상 지급보증 의무 면제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사례를 방지하고,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행법에서는 삼자 간의 직접 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 지급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위임을 받아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만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¹⁸⁾

17)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삭제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18) 대표적으로 2023년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인 (주)대명수안이 발주자인 (주)대명종합건설로부터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 묵시적·명시적 위임을 받고, 공사대금을 원사업자인 (주)대명수안이 지급하였음. 이는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와 지급보증 의무 모두를 회피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개정안들은 발주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할 때, 지급보증 제도가 발주자의 직접 지급에 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개정안들이 삭제하려는 요건인 ① 직접 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②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모두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인데,

직접 지급의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이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압류 결정 이후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으므로 개정안처럼 이를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서 삭제하면 발주자 직접 지급보다는 지급보증 제도를 장려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경우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데도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고, 보증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다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다음으로 현행법 제14조제2항¹⁹⁾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사업자에게 대금지급의 보증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 발주의 경우 민간 발주와 달리 발주자 지급 불능 등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언급된 태스크포스 논의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임.

19)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4. 하도급 연동제 적용 대상의 확대(이강일 의원안)

□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재료비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 ⑮ (생략)	제2조(정의) ① ~ ⑮ (현행과 같음)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⑯ -----“주요 재료비등”이란----- -----원재료비 및 경비(「에너지법」 제2조제1호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경비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8에 따른 운송비용을 말한다)로서-----비율을-----.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	⑰ -----재료비등-----.

현행	개정안
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2. (생략)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u>원재료</u>,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생략) ③ ~ ⑫ (생략)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u>재료비</u> <u>등</u>----- ----- ----- 4. (현행과 같음) ③ ~ ⑫ (현행과 같음)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 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임.

□ 현행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한 하도급거래임.²⁰⁾

-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함(법 제2조제16항),

- 즉,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임(법 제2조제17항).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수탁사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해 지난 2023년 법제화한 것으로서 하도급 거래에서의 비용 상승 위험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20) 다만,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2025년 2월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을 제정하였음.

□ 개정안 제2조제16항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원재료와 에너지 사용에 따른 경비 및 운송비용을 포괄하는 ‘주요 재료비등’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으로 함.

- 즉,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에너지 비용 및 운송비를 포함한 공급원가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율 이에 연동하여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 우선 가격변동의 예측 가능성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취지는 원재료 가격의 예상치 못한 급등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예측이 용이한 에너지 비용 및 운송비를 연동제 적용 대상에 추가할 필요에 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특히 전기·가스요금 등은 그 결정 과정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²¹⁾에 따라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요금이 결정·조정되고, 운송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2호²²⁾에 따라 고시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기초로 그 운임이 정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에 따른 월 단위 차주원가>

(단위: 원)

품목	고정원가 ¹⁾	변동원가 ²⁾	합계
철강재	2,961,423	4,483,572	7,444,995
1톤 일반형 화물차	915,275	805,253	1,720,528
5톤 일반형 화물차	1,486,131	2,026,466	3,512,597
12톤 일반형 화물차	2,360,985	3,718,021	6,079,006
25톤 일반형 화물차	2,809,933	4,504,415	7,314,349

- 1)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단체·협회비,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 2) (변동원가항목) 유류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에 소모품비

- 또한, 시장실패에 대한 국가 개입 범위의 문제로서 적용대상의

2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확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사적계약에 기반을 둔 거래 관계에 대하여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 조정과 변경을 강제하는 ‘사적자치 원칙’의 예외라는 점과 함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이미 발의되어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²³⁾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연동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들에 대하여 일관되게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제조원가 대비 전력비 비중이 높은 뿌리산업계를 중심으로 에너지까지 연동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참고자료 참조)을 고려하여 개정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함.

- 참고로 2025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국정과제로 설정되었음.

23)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을 포함시키는 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202055), 노무비를 포함시키는 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205029),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을 포함시키는 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2205697)

5. 하도급대금의 압류 제한(이강일·강준현·이현승 의원안)

□ 개정안들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은 압류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면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이강일 의원안은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가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4조의2제1항), 양도·면제 또는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의2제2항)
- 강준현 의원안은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압류와 양도·면제 등 처분할 수 없도록 하면서(안 제14조의2제1항),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안 제14조의2제2항).
- 이현승 의원안은 하도급대금의 2분에 1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 양도 및 면제 등 처분할 수 없도록 하면서(안 제14조의2제1항), ‘압류 등이 금지되는 금액의 산정방법’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안 제14조의2제2항)

현 행	이강일 의원안	강준현 의원안	이현승 의원안
<신 설>	제14조의2(하도급대금에 대	제14조의2(하도급대금에 대	제14조의2(하도급대금에 대

현행	이강일 의원안	강준현 의원안	이현승 의원안
	한 압류 등의 금지) ① 원사업자가 도급받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의 도급금액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은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청구	한 압류 등의 금지) 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면제 등 처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한 압류 등의 금지) 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하여야 하는 부분의 하도급대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면제 등 처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 등이 금지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

현	행	이강일 의원안	강준현 의원안	이현승 의원안
		<u>권을 양도,</u> <u>면제 또는 담</u> <u>보로 제공할</u> <u>수 없다.</u>	<u>대통령령으로</u> <u>정한다.</u>	<u>령령으로 정</u> <u>한다.</u>

□ 압류 금지는 법적 의무를 지는 자(채무자)가 권리자(채권자)에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민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의 예외로서 일정한 범위 내의 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보장을 특징으로 함.

□ 압류 금지에 관한 일반법인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²⁴⁾은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권을 열거(제8호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대체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임.

- 또한, 같은 조 제3항²⁵⁾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24)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 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

고려하여 압류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 압류 금지는 개별법에서도 다양한 양태로 관찰(참고자료 참조)되는데, 크게는 압류만 금지하는 경우, 압류와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 압류와 양도, 담보제공까지 금지하는 경우로 구분됨.

-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²⁶⁾은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4조²⁷⁾는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2조²⁸⁾는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게 함.

□ 개정안들이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원사업자에 대한 제3의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프랑스의 직접소권도 유사한 취지로 보임.

- 현행법상 원사업자의 제3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하도급대금 포함)에 대해 압류 등을 신청하면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여 정당하게 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26)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27)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28) 제32조(구조금 수급권의 보호)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하도급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⁹⁾

□ 개정안들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압류, 양도, 면제³⁰⁾ 및 담보제공을 하지 않도록 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으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 지급제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청구권은 원사업자에 대한 제3채권자의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은 압류, 양도, 면제 및 담보제공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압류뿐만 아니라 양도나 담보제공까지 금지하는 것은 피해보상금을 지원하는 입법례에서 많이 관찰되고,

29)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상반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즉, 헌법재판소(2001헌바98)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도가 원사업자의 채권자들 중에서 수급사업자를 우대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시하면서도, 일반채권자와 달리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도급채권 형성에 직접 기여하는 자이고,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면 그 사회적 연쇄파동이 심각해진다는 점에서 수급사업자와 다른 채권자 간의 합리적 차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하도급대금에 대한 수급사업자 권리를 우선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2001다64769)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원수급인(원사업자)의 도급인(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있다고 보거나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사실상 수급사업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것을 일부 제한하였음.

30) 여기서의 면제는 민법 제506조에 따른 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즉,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대금 청구권을 갖는 채권자이고, 발주자는 채무자임. 따라서 채권자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발주자에게 그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하도급거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만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이현승 의원안은 하도급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 등으로부터 대항할 수 있게 하고, 강준현 의원안은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받는 하도급대금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반면, 이강일 의원안은 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는바 압류 등이 금지되는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압류 등의 금지는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채권자 간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봄.
- 이와 관련하여서는 압류 등이 금지되는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하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³¹⁾은

31) 제45조(수급권의 보호) ②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1. 직계존속(直系尊屬)·직계비속(直系卑屬)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본인,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장애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장애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그 세부 범위를 각호에 상세히 열거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09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참고자료 1】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 조사 결과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5월, 뿌리 기업 700개사)

1.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

문항	전체	주업종				
		주조 산업	금형 산업	열처리산업	표면처리 산업	소성 가공 산업
30% 이상	19.4	17.9	2.9	52.9	20.7	2.9
30%~20%	24.4	11.4	17.9	28.6	39.3	25.0
20%~15%	13.0	20.7	15.7	6.4	7.9	14.3
15%~10%	24.6	29.3	39.3	11.4	17.9	25.0
10%~5%	8.7	8.6	12.1	0.7	10.7	11.4
5% 미만	9.9	12.1	12.1	0.0	3.6	21.4

2.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 정도

문항	전체	주업종				
		주조 산업	금형 산업	열처리산업	표면처리 산업	소성 가공 산업
매우 부담	57.7	74.3	32.9	81.4	55.7	44.3
약간 부담	32.4	16.4	49.3	17.1	37.9	41.4
부담되지 않는 편	9.6	9.3	17.9	1.4	5.7	13.6
전혀 부담 없음	0.3	0.0	0.0	0.0	0.7	0.7

3. 전기료 급등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 요청

문항	전체	주업종				
		주조 산업	금형 산업	열처리산업	표면처리 산업	소성 가공 산업
요청하지 못했다	76.4	79.3	94.3	47.9	82.9	77.9
요청한 적이 있다	23.6	20.7	5.7	52.1	17.1	22.1

【참고자료 2】 개별법에 따른 압류 금지의 예

금지 대상	법률 및 조문	재산권
압류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도급액 중 근로자 임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	도급액 중 근로자 임금
	전기공사업법 제34조	도급액 중 근로자 노임
	국가유산수리법 제50조	도급액 중 근로자 임금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3조	수당수급계좌의 예금채권
	서울대법 제21조	수업료, 납부금을 받을 권리, 서울대학교 예금채권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보험급여, 요양비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수급품,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
	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 급여수급전용계좌의 급여와 채권
	군인연금법 제18조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
	군인재해보상보장법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
	기초연금법 제21조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
	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	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채권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7조	수급계좌의 예금 중 일정금액 이하의 채권
	농업협동조합법 제140조	여신자금
	다중이용업소법 제21조의2	보험청구권 중 타인의 사망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청구권
	독립유공자법 제11조의2	보훈급여금 중 일정금액 이하에 대한 채권
	아동복지법 제64조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아동수당법 제18조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
	어선업재해보상법 제34조, 제56조	보험급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5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 중 일부금액
	우편법 제7조	우편 전용 물건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8조	책임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청구권
	의료급여법 제18조	요양비등

금지 대상	법률 및 조문	재산권
	의료법 제13조	의료인의 의료기재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수급계좌의 예금채권
	자동차 손배법 제40조	보험금청구권 등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 수급계좌의 예금채권
	장애인연금법 제19조	수급계좌의 예금채권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16조	계좌에 입금된 지원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8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선불충전금
	전통사찰법 제14조	전통사찰보존지의 건조물과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일부
	주차장법 제19조의16	보험금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	중소기업자금 중 관리자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수급계좌의 예금채권
	참전유공자법 제6조의2	참전명예수당 중 일부
	향교재산법 제10조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대지
	형집행법 제76조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
	화물자동차법 제58조	운송사업자의 차량 및 재정지원을 받을 권리
	화재보험법 제10조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의 청구권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31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압류, 양도	감염병예방법 제73조	국가보상을 받을 권리
	국가배상법 제4조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근로기준법 제86조	보상권
	의료급여법 제18조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자동차 손배법 제40조	후유장애지원금을 받을 권리
	장애인보조기기법 제23조	장애인등의 보조기기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16조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법 제23조	보상청구권, 보상금지급청구권

금지 대상	법률 및 조문	재산권
압류, 양도, 담보제공	10·27법난법 제5조	의료지원금
	이태원참사특별법 제75조	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5·18보상법 제13조	보상금등을 받을 권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27조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
	1959이전군퇴직금법 제11조	퇴직급여금을 받을 권리
	건설근로자법 제20조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
	고엽제법 제7조의4	수당을 받을 권리
	고용보험법 제38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공무원연금법 제39조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공무원재해보상법 제18조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3조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을 권리
	국가보훈기본법 제21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국가유공자법 제19조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
	국군포로송환법 제17조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
	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을 받을 권리
	전후납북자법 제18조	피해위로금등을 받을 권리
	군인연금법 제18조	급여를 받을 권리
	군인재해보상보장법 제17조	급여를 받을 권리
	퇴직급여법 제7조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
	기초연금법 제21조	수급권을 받을 권리
	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이나 현물
	노근리사건법 제10조	의료지원금을 받을 권리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7조	보험금을 받을 권리
	강제동원조사법 제31조	위로금등을 받을 권리
	독립유공자법 제11조의2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

금지 대상	법률 및 조문	재산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공제금을 받을 권리
	지뢰피해자법 제13조	위로금등을 받을 권리
	진폐예방법 제27조	위로금을 받을 권리
	참전유공자법 제6조의2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
	아동수당법 제18조	아동수당 수급권
	약사법 제86조의7	피해구제급여를 받을 권리
	여순사건법 제14조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연구실안전법 제26조	보험금 지급청구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6조	증여된 원호재산
	의사상자법 제17조	보상금을 받을 권리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
	장애인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
	장애인활동지원법 제46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권리
	재난안전법 제66조	재난 피해 보상금, 지원금 등을 받을 권리
	북송저지특임자법 제11조	보상금등을 받을 권리
	정당법 제27조의2	정당보조금
	제2연평해전보상법 제8조	보상금을 받을 권리
	제대군인법 제18조의2	전직지원금을 받을 권리
	4·3사건법 제17조의4	보상금등을 받을 권리
	외부감사법 제32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공동기금
	코로나바이러스피해보상법 제5조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특임자보상법 제15조	보상금등을 받을 권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1조	보험금지급청구권